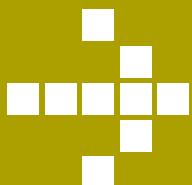


금융 생활 안내서\_  
은행 · 중소서민금융 편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01\_은행거래시 유의사항

02\_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

03\_할부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04\_예금자보호제도

## 금융거래시 유의사항

### 은행거래시 유의사항

#### ● 예금거래시 유의 사항

##### ■ 통장을 개설할 경우

- ① 「금융실명제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거래는 반드시 본인의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합니다.
- ② 상품가입시 창구 등에 비치된 거래약관을 읽어보고 가  
입해야 하며, 가입후 통장에 기입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③ 비밀번호는 제3자가 쉽게 추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  
고 제 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④ 통장과 거래인감은 본인이 보관하며, 통장과 인감은  
별도로 보관해야 사고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 입금하거나 인출할 경우

- ① 예금을 하거나 찾는 경우 은행직원이 통장 또는 입금의뢰서와 현금을 받아 이를 확인할 때까지  
창구를 떠나지 말고 처리된 통장이나 입·출금증, 예금주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현금인출기에 비밀번호 입력시 남의 시선이 닿지  
않도록 주의하고, 금액과 명세표를 대조하여야 합니다.
- ③ 현금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 즉시 은행직원에게 연락하여 예금인출로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 ■ 예금통장을 분실(도난)하였을 경우

- ① 예금통장이나 인감, 현금카드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즉시 은행을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은행에 신고하고 은행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 ② 신고시 직원의 이름, 신고시간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③ 현금카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비밀번호 뿐만 아니라 카드번호 예금계좌도 변경하여야 안전  
합니다.

## ● 대출거래시 유의사항

### ■ 대출받기 전 유의사항

대출은 본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 목적, 상환 능력, 상환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의 연체는 본인의 신용등급 악화를 가져오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 처분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대출받기전 다음의 내용을 꼭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 ① 대출금의 사용용도가 꼭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를 위해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또는 다른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대출만기시 상환 어려움으로 연체할 수도 있습니다.
- ②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여 평소 생활수준에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③ 대출조건은 금융기관별로 여러 가지가 있으므로 이자율, 상환조건, 대출비용 등을 충분히 파악한 후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 ④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한 장기적인 저축계획이 필요합니다. 대출형태에 알맞은 자금마련계획을 세운 후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저축하여 대출금 상환에 대비해야 합니다.

### ■ 대출시 대출조건 살펴 보기

대출은 금융 기관의 중요한 금융상품입니다. 따라서 대출이용자인 수요자에게 다양한 조건과 대출상품을 제시하고 있으며, 대출을 받을 때에는 본인에게 알맞은 대출상품 중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선택해야 합니다.

#### ■ 이자율

이자율은 대출조건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자율이 같다면 대출한도, 대출기간 등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이자율이 고정금리인가 아니면 변동금리인가 등을 살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 ■ 대출한도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자율이 낮더라도 필요한 금액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면 다른 금융기관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상환방법

대출금의 상환은 대출목적이나 대출금의 상환기간, 상환능력에 따라 상환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 상환방식은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그리고 거치상환방식 등이 있습니다.

만기일시상환은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상환부담이 적지만 일시에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과 함께 분할상환방식에 비해 이자비용이 비쌉니다. 따라서 한번에 상환할 충분한 자금 마련 계획이 없으면 대출금 상환이 매우 부담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부담은 있지만, 일시상환방식에 비해 이자율 비용부담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일반적으로 1~3년입니다. 대출기간이 길수록 이자비용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대출기간을 무조건 길게 하기보다는 사용목적, 상환여력 및 자금수급 등을 고려하여 대출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대출금이 필요 없어 당초 계약된 대출만기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으므로 용도 및 기간을 등을 고려하여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대출기한 전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여 은행이 상환된 자금을 당초 조달시점에서의 금리로 재운용을 하지 못함에 따른 은행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징구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 펀드가입시 유의사항

### ■ 펀드 가입전 유의사항

펀드의 선택은 투자성과 및 투자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 전에 다음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① 펀드는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투자원금 및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펀드가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환율변동의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해지방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② 투자자금의 성격, 투자기간, 투자목적,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적절한 펀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③ 과거의 운용성과 및 평판 등을 고려하여 자산운용회사를 선택하고, 판매회사의 평판, 직원의 전문성 및 영업점 위치 등을 고려하여 판매회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 ④ 투자대상, 운용보수 및 수수료 등을 고려하여 펀드를 선택하며, 투자설명서를 수령하여 펀드의 운용방법, 투자위험, 펀드투자비용, 판매 및 환매 방법 등의 주요 내용은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하여야 합니다.
- ⑤ 펀드에 가입한 이후 수시로 펀드의 기준가격과 운용실적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 펀드환매 신청전 유의사항

- ①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의 경과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환매수수료 부과기간 종료이전에 환매할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② 환매 소요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한 펀드유형 및 신청시간에 따라 출금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형펀드의 경우 환매신청일(T일) 다음날(T+1일, 2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3일후(T+3일, 4영업일)에 출금 할 수 있으며, 채권형펀드의 경우 환매신청일(T일) 2일후(T+2일, 3영업일)의 기준가격으로 2일후(T+2일, 3영업일)에 출금 할 수 있습니다.
- ③ 펀드가입액중 환매 할 금액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④ 환매청구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환매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⑤ 폐쇄형 펀드 등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된 펀드는 그 만기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sup>2)</sup>

### ■ 보험가입전 유의사항

- ① 자신에게 닥칠 위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로 인한 손실은 무엇인지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보험이 여러 가지가 있다면 가장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우선 순위를 정해 선택해야 합니다.
- ② 자신의 수입과 지출 등을 고려하여 보험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좋은 보험상품이라도 자신의 재무상태를 고려하지 않아 가계에 부담이 될 경우 효용 가치는 떨어집니다.
- ③ 각 보험사의 상품 특성 및 보장내용, 가입 조건 등을 충분히 비교한 후 보험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홈페이지나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http://www.knia.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http://www.klia.or.kr)) 등의 보험상품 비교 사이트를 이용하여 보험상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④ 보장성 보험에 지불하는 총금액은 가계소득의 1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는 보험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험금이 많다면 보험료도 많아지게 됩니다.
- ⑤ 보험가입시 피보험자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사람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을 들 경우 가정의 소득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의 손실이 가장 크고 유가족의 생계에 미치는 영향도 가장 클 것입니다. 보통 가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 ⑥ 보험가입은 전통적인 판매채널인 설계사, 대리점 뿐만 아니라 은행창구를 통한 방카슈랑스, 전화를 이용한 텔레마케팅,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보험가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금융생활안내서-보험편 (금융감독원,2007.)을 참조

## ■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 보험에 관한 설명 적극적으로 듣기

가입자로서 설계사 등에게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보험 상품은 대부분 보험설계사들의 가입 권유에 따라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험과 같은 금융 상품은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약관 등을 통해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청해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상품설명서 및 약관 확인하기

설계사가 설명하는 내용도 약관에서 찾아보고 약관상의 근거를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입 후 보험사고가 났을 경우 서류화된 자료, 즉, 약관에 의해 보상이 이루어지며, 구두 설명은 시간이 경과하면 그 진위여부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험가입을 결정하고 보험계약청약서에 자신의 계약의사를 서명으로 확인하기 전에 반드시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해 주는 상품설명서와 보험보장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상품설명서와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서 작성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보험이 장기계약인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나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상품 설명서상의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료 납입기간 등 정확한 보장내용을 이해한 후 체결하는 것이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는 길입니다.

### ■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알리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청약서 작성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반드시 청약서상에 해당 질문표를 기재하여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질문표에 표시하지 아니하고 설계사에게만 과거병력 등을 알려주는 것은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보지 않아 보험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 자필로 서명하기

보험계약청약서는 반드시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청약서 및 상품설명서 마지막 부분에는 보험계약자가 설명받은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자필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서술 및 서명을 기입하기 전에 한 번 더 관련 내용을 충실히 설명받고 확인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 계약자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는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모두 인정한 내용임을 의미하므로, 후에 청약이나 계약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길 경우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계약자의 책임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 ■ 보험증권 확인하기

보험증권은 최종적으로 체결된 계약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것으로 계약자는 청약서부본, 상품설명서, 약관 및 증권을 반드시 챙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증권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본인이 가입하고자 했던 상품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품이 다른 경우 계약을 취소하여 계약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한편, 보험계약 가입 후 보험회사의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개시되는 것은 1회 보험료가 납입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1회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반드시 보험회사가 발행한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보험가입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여 보험사고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1회 보험료 영수증도 반드시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보험계약 철회하기

청약서에 보험상품 가입 의사 표시로서 자필서명을 한 이후라도 단순히 마음이 바뀌거나 보장내용이 설계사의 설명과 다르거나 더 좋은 상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회사의 고객만족센터(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철회방법을 문의하고 안내받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또는 청약서부본 뒷면에 철회신청서 양식과 함께 철회방법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철회하면 됩니다. 단, 철회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15일입니다. 그러나 계약관련 서류(예를 들어 약관, 보험증권 등)를 받지 못했거나, 청약 서상에 자필서명 누락 등 형식요건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전자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최근의 금융 거래는 금융회사의 창구 이외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인터넷 전화, 핸드폰 등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가 늘어나면서 해킹 등을 통한 전자금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금융 거래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①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가입시 설정한 로그인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설정된 비밀번호는 금융회사 직원 등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 ② 피싱사이트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은행이나 쇼핑몰, 온라인 게임몰 등 유명한 기관을 사칭하여 가짜 홈페이지 주소가 들어 있는 이메일을 보내고 가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수집한 정보를 악용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인터넷뱅킹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잔액을 먼저 조회하여 최근의 잔액을 확인하여 피싱사이트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짜 은행 사이트는 잔액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피싱이외에 파밍(pharming)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파밍은 해커가 PC의 호스트파일(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는 파일)을 조작해 고객은 진짜 금융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려고 해도 가짜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를 훔치는 사기 수법입니다.

### ③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저장장치에 보관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인감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해킹위험에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USB, CD 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우편 보관함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탈사이트, 웹하드 등에는 공인인증서를 절대 보관해서는 안됩니다.



#### ④ PC의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업데이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최신의 해킹 공격을 예방해 주는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위해서는 윈도우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이용해야 합니다.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한번만 설정하면 최신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⑤ SMS를 적극 이용해야 합니다.

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SMS(휴대폰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를 인지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⑥ 전화, 현금인출기, 인터넷 등 전자금융매체를 이용한 환급사기에 주의 하세요.

최근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우체국, 건강보험공단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세금, 범죄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 주거나, 신용 카드 분실에 따른 결제금액이 필요하다며 계좌번호 또는 현금인출기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주의가 요구 됩니다.



## 신용카드 이용시 유의사항

### ● 신용카드 회원가입시 유의사항

신용 카드는 현금을 대신하는 지불결제 수단으로 판매신용, 할부신용, 현금대출, 카드론 등 다양한 형태의 신용을 제공합니다. 이자나 수수료의 지급 없이 최장 50여일 정도의 신용을 제공하고, 현금이 필요하면 현금 서비스나 카드론으로 현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용 카드의 편리함 이면에는 충동구매와 소비조장이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 카드는 자신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 카드를 이용한 구매는 구매력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 시켜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환능력을 넘어서는 신용 카드의 사용은 미래의 부채만 증가시키게 되므로 신용 카드 회원 가입시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신용카드회원 가입시 유의사항

- ①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회원의 경우에는 가족회원의 동의를 얻어 본인회원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용카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급 받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해지하여 불필요한 연회비 납부 및 신용카드 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③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카드발급을 신청한 경우, 최초년도 연회비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의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카드해지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④ 신용카드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에게 연회비 등을 통해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연회비 등을 충분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신용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월에 일정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서비스만 보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과소비에 의한 부채만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국내외 겸용카드(VISA, MasterCard, AMEX, JCB 등)는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나 국내전용카드에 비해 연회비가 비싸고 국내 이용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해외에서의 카드사용계획이 없는 경우는 국내전용카드를 발급 받는 것이 연회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⑤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현재화시켜 사용하는 것으로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을 자제하고, 본인의 소득수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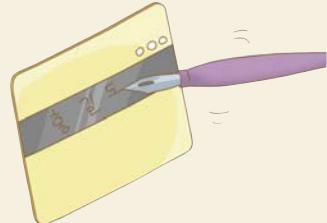
## ● 신용카드 수령 후 유의사항

### ■ 신용 카드 서명란에 서명

신용 카드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서명은 신용 카드 이용 시 본인확인에 사용되며 미서명시 도난·분실 등에 의한 부정사용시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사용등록을 마쳐야

신용 카드 배송시 카드는 사용정지 상태로 배송됩니다. 따라서 카드의 사용을 위해서는 카드사 홈페이지, ARS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카드번호,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용등록을 마쳐야 정상적인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2~3일이 경과한 후 자동 사용등록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 보관 및 이용 시 선량한 관리의무 준수

신용 카드는 카드의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해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로 이용금지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이용 관리하도록 관련 법규 및 약관 등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정도에 대해서는 판례에 따르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판 85다카2273)

## ● 신용판매 이용 시 유의사항

### ■ 신용 카드 분실·도난 시 유의사항

#### ■ 도난·분실신고

신용 카드 회원이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이 분실·도난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된다면 이는 회원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도난·분실신고시 카드회원이 손실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 ①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

신용카드를 도난·분실 당하지 않은 회원이 허위로 도난·분실 신고를 하고, 사실상으로는 본인 또는 제 3자가 그 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② 카드의 미서명

신용카드 거래는 회원이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고 가맹점은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카드가 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를 도난·분실당한 경우 부정사용자로 하여금 손쉽게 그의 서명을 무단기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정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는 회원의 카드의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상은 제외됩니다.

#### ③ 관리소홀

카드회원은 카드의 소지인으로서 그 카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책임을 집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책임에 반할 관리소홀로 도난·분실을 당한 경우 부정사용에 회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는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현금에 준하는 수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④ 대여·양도·보관·이용위임·담보제공·불법대출

신용카드는 카드의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을 관련 법규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카드회원의 신용에 근거하여 보증인 없이 회원에게 교부되는 일신전속적(一身專屬的)인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관하게 하던 중 도난·분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금액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⑤ 회원의 가족 ·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발생 경우

일부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배우자나 가족에게 양도하여 사용토록 하기도 하는데 도난 · 분실 등으로 부정사용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가족일 경우라 할지라도 신용카드를 대여 · 양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합니다.

#### ⑥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행위 경우

신용카드는 재화와 용역의 구매 및 이용 후 현금처럼 지불수단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융통의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현물 구매 결제를 하는 이른바 카드깡\*은 관련 법규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과 짜고 급전이 필요한 신용카드 회원에게 허위로 매출을 일으키고 물품의양도 없이 이를 현금화시킨 후, 이자와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부를 떼고 회원에게 대출해 주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신용카드에 의해 물품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신용카드 회원이 구맹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 금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70조 벌칙)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융통 등의 부당행위는 부정사용에 있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⑦ 비밀번호 관련

신용카드 약관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에서 비밀번호가 누설되어 부정사용이 발생된 경우 그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주민등록번호나 전화번호 등 알기 쉬운 번호로 지정하면 안되며,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절대 알려주어서도 안됩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⑧ 명의도용 부정발급

신용카드 부정발급은 신용카드 신청인이 아닌 권한이 없는 제3자가 신용카드를 신청 발급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사는 신용카드의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발급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발급함에 있어서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도용에 의해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발생한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명의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철회권 · 항변권

### 할부철회권

할부철회권이란 물품 및 용역의 구매금액이 20만원을 초과<sup>\*</sup>하는 할부매출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나내에 그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반 할부거래의 경우 할부가격이 10만원 이하, 신용카드를 이용한 할부거부의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비싼 물건을 충동구매한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명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차, 냉장고 및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등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은 철회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의 경우 할부가격이 20만원 이하인 할부계약의 경우 철회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 할부항변권

할부항변권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가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구입한 뒤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할부금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할부계약이 무효 ·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판매자가 책임을 못 질 경우, 예정일까지 물건을 받지 못했을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잡지 1년 구독비용이 30만원으로 신용 카드 회원이 이 비용을 10개월 할부로 결제하였으나, 5개월째부터 잡지가 배달되지 않는다면, 이 회원은 할부거래계약서상의 항변요청서를 작성하여 카드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낼(항변권 행사) 경우 나머지 할부대금 18만원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 ① 요건

- 구매 물품의 금액이 20만원 이상인 할부매출 중 할부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할부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구매물품이 할부 계약시 약정한 시기까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불이행한 경우
-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행사의 제한

- 할부 선결제 등으로 인하여 이미 할부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상거래 목적의 할부거래의 경우

### 〈 철회권과 항변권의 비교 〉

구 분	철회권	항변권
공동요건	거래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거래	
적용대상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이 이루어 졌더라도 이를 취소하고 싶은 경우	결제한 물건 서비스가 당초 설명과 상이하거나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
요청기간	통상 거래일 또는 물건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할부기간 중 언제든지 행사 가능
행사방법	카드사와 가맹점이 내용증명 발송	
예외	상행위 목적의 할부거래 – 소비권의 보호를 위해 제정된 할부거래법상의 취지상 영리행위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 ■ 기한의 이익 상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란 할부 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하게 납부해야 하는 할부금을 나누어서 내지 않고 한꺼번에 모두 갚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가 해당됩니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5만원 이상 또는 10일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 소비자 파산을 신청하였거나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 경우
- 할부금을 다음 기일까지 계속해서 2회 이상 내지 않고 내지 않은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할부금의 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이자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할부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 ■ 리볼빙결제 이용시 주의사항

리볼빙결제는 신용카드대금중 일정 부분 이상의 대금만 결제하면 잔여 결제대금 상환이 자동적으로 연장되고, 잔여 이용한도 내에서는 신용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결제방식입니다.

리볼빙결제시 결제대금의 상환방법은 정률법과 정액법이 있습니다. 정률법은 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으로 회원은 결제요청비율을 5~100% 사이에서 1% 단위로 지정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액법은 리볼빙 이용금액에 대하여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리볼빙결제는 결제대금의 전부를 일시에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카드 이용자의 단기 유동성을 개선하여 소비 여력을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금 결제가 장기화되고 결제대금이 누적되면서 이자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당장 결제해야 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줄어들 때에 따라 현재의 소비를 과소 인식하여 무분별한 소비행태로 미래의 부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리볼빙결제를 이용하고 가용자금에 여유가 있으면 즉시 남은 결제금액을 상환하는 것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리볼빙결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카드사에 알려 불필요한 이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시 유의사항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 제고를 위해 다양한 포인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포인트 유효기간

적립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신용카드사 및 신용카드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적립일로부터 5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된 포인트는 소멸됩니다. 신용카드사들은 소멸예정 포인트에 대하여 카드사 홈페이지, 청구서 등을 통해 회원 본인에게 안내하여 포인트 소멸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적립된 포인트는 회원 본인이 적절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가 정지·해지된 경우에도 적립된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된 후 소멸되므로 신용카드의 정지·해지시에는 적립된 포인트를 확인하여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포인트 소멸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포인트 적립

신용카드 포인트의 적립방법이나 적립비율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카드사들은 이용금액이나 카드 종류별 적립비율을 차등화하고 있으므로 약관과 포인트 관련 부속명세서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포인트 적립은 카드 이용대금을 결제일에 정상적으로 완납한 경우 전액 적립되며, 결제 대금 중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가 연체되었더라도 일부 결제된 금액에 대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거나 각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 이내에 신용카드 대금을 완납한 경우 결제금액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금 서비스, 카드론, 연회비, 이자, 기타 제수수료, 포인트 사용금액 등은 카드사가 별도 정하지 않는 한 적립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③ 포인트 사용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은 카드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는 신용카드 연회비납부, 결제 대금 차감, 캐쉬백, 인터넷 쇼핑몰, 제휴가맹점 등 다양한 사용처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선포인트 결제 이용 시 유의사항

선포인트 결제는 신용카드 회원의 물품구입시 카드사가 물품금액의 일부를 대납하여 주고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가 대납하여 준 금액을 향후 일정기간(3년) 동안 포인트로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선포인트 결제는 카드사마다 세이브 포인트, 포인트 세이브, 하이 포인트 등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초기의 선포인트 결제는 주로 자동차 구입시에 이용되었으나, 최근에는 핸드폰, 가전제품, 네비게이션, 노트북, 카메라, 여행상품, 대출이자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면서 선포인 결제를 위한 전용 신용카드가 출시되거나 기존의 포인트제도를 변경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인트 결제는 회원이 제품구입시 할인받은 금액 만큼을 카드사 비용으로 먼저 회계처리하고 회원은 이를 포인트 상환하는 포인트선지급 방식과 제품 구매시 할인받은 금액을 회원이 할부 거래 방식으로 갚아 나가는 포인트 연계 할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포인트 결제를 이용한 물품구입은 할인이나 무상구매가 아니라 회원이 물품을 구입한 이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적립되는 포인트로 할인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일종의 채무입니다.

특히 포인트 연계 할부 방식의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따른 이자 부담과 함께 연체시에는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포인트 연계 할부거래방식의 경우에는 별도의 할부거래 약정서를 마련하여 거래조건, 상환의무 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약정서를 교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약정서에는 포인트 적립 및 적립제한 조건, 포인트로 할부채권을 상환하기 위한 필요사용액, 필요사용액 미달시 현금상환의무, 미상환시 불이익 및 상환 후 잔여 포인트의 활용 방법, 포인트 거래조건 변경시 카드사의 사전고지, 기타 회원의 권리제한·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약관과 약정서 등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 ● 카드론 · 현금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현금서비스는 신용카드 회원이 카드사로부터 소액의 자금을 대출받는 것으로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회원의 신용도에 따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출 관련 서류 없이 카드사가 부여한 한도내에서 ATM,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기간이 최장 50여일 정도의 단기로 일반대출 보다는 이자율이 훨씬 높고, 다음달 결제일에 원금과 이자 그리고 취급수수료를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돌려막기의 악순환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하고 가용자금의 여유가 생기면 선결제 등을 이용하여 바로 갚아야 이자부담과 돌려막기나 연체 등에 의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카드론은 현금서비스에 비해 대출기간이 3~24개월로 비교적 길지만 이자율은 현금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오래 사용하기에는 이자부담이 크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 신용카드 해지 관련 유의사항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함께 도난·분실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연락하여 반드시 해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해지는 카드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원이 최종 사용일(신용카드 발급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이상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카드사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지 의사를 확인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 때 계속 사용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회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일정기간 동안 유지되므로 해지 전후에 잔여 포인트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기타 알아두면 좋은 사항

### ■ 출국여부 확인 시스템

해외에서 위·변조된 신용카드가 부정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도입된 제도로서, 해외매출 승인시 회원의 출국여부를 확인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회원인 경우 승인거부 등의 조치를 취해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회원의 카드가 해외매출 승인요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부정사용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에 전화하여 출국여부확인시스템을 신청할 경우 해외 출입국시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발급중지 서비스

신용카드 발급중지 서비스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신용카드 발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여신금융협회 등에 자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카드발급을 아예 정지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지갑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비하여 신용카드 발급중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기존의 신용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하면서 신용 카드 신규발급은 일괄적으로 중지되어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 SMS (Short Message Service)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사용 즉시 거래내역을 회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서비스로 회원이 결제한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할부금융 거래시 유의사항

할부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계약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체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자율, 월할부금, 수수료, 만기시 연장 조건 등 계약 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자세히 확인한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 할부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중요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

1. 매도인 · 매수인 및 신용제공자의 성명 및 주소
2. 목적물의 종류 · 내용 및 목적물의 인도등의 시기
3. 현금가격
4. 할부가격
5. 각 할부금의 금액 · 지급회수 및 시기
6.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
7. 목적물의 소유권의 유보에 관한 사항
8. 매수인의 철회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9. 매도인의 할부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0. 매수인의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사항
11. 매수인의 항변권과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할부금융 계약서의 중요 기재사항은 공란으로 두지 말고 반드시 본인 자필로 작성하고 계약서 사본 (할부금융약정서)을 받아서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할부금융 약정서에 본인 서명과 인감만을 날인해 주는 경우에는 본인도 모르게 계약내용이 변경되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할부금융 연체이자율은 연 25~29%의 고율이므로 연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동이체를 할 경우 할부금 납부기일에 예금잔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금이 연체되는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금융거래상의 불이익과 함께 경제적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 ● 예금자보호제도란 무엇인가?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예금의 지급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예금 등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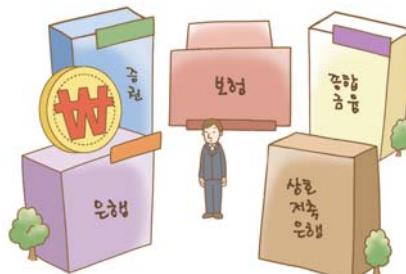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 보호대상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하였다가 영업정지 등으로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하여 일정한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 ● 보호 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으로 은행 · 증권회사 · 보험회사(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 종합금융회사 · 상호저축은행 등 5개 금융권이 해당됩니다.

또한 농 ·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본 · 지점과 외국은행 지점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으로서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입니다. 다만, 농 · 수협의 지역조합은 예금보험 가입 금융기관이 아니며, 각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설치 · 운영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금융기관이 아니므로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예금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우체국 취급 금융상품의 경우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고,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새마을금고연합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에는 2004년부터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자체 예금자보호 기금을 조성하여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고객이 맡긴 돈으로 운용하는 고객의 투자재산을 자기재산과는 구분하여 별도의 보관기관에 보관하고 이를 자신의 부채상환 등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산운용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고객은 보관된 자기의 투자재산을 처분하여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 보호/비보호 금융상품

### ■ 예금자 보호 금융상품

#### 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등 저축성예금
-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등 적립식예금
-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보전형 신탁 등

#### 증권회사

- 금융상품 중 유가증권(수익증권, 기업어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있는 금액
-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개좌설정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
- 퇴직보험계약
-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

#### 종합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 상호저축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등

## ■ 예금자 비보호 금융상품

### ■ 은행

- 외화예금, 양도성예금증정(CD), 환매조건부채권(RP)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 신탁
- 은행발행채권, 농·수협중앙회 공제상품 등

### ■ 증권회사

- 유가증권,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 청약자예수금, 제세금 예수금, 선물·옵션거래 예수금, 유통금융 대주 담보금
- 환매조건부채권(RP), 증권사 발행채권
-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랩어카운트, 주가지수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 ■ 보험회사

-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 변액보험계약(주계약) 등

### ■ 종합금융회사

- 간접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종금사발행 채권 등

### ■ 상호 저축은행

- 저축은행발행채권 등

## ● 보호 한도

예금보호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때 '소정의 이자'는 예금자가 거래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율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이자'는 예금 가입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신문 등에 공고 한 날)까지 이자 발생분을 말합니다. 다만, 미지급이자 또는 미원가이자만 해당되며, 영업 정지 이전에 예금자에게 이미 지급되었거나 원가된 이자는 보험금 계산시 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호한도 5,000만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금액입니다. 이때 예금자 1인이라 함은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대상이 됩니다.

또한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의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금을 먼저 상환(상계)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호합니다.



### 〈〈 예금보호 사례 〉〉

사례	보호 내용
① A저축은행에 예금 4천만원, A저축은행의 계열회사인 A2저축은행에 예금 6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경우	계열회사라도 별개의 금융회사이므로 A 저축은행 4천만원, A2 저축은행 5천만원 각각을 보호
② B은행에 예금 3천만원, C은행에 예금 4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을 때 B, C은행이 합병한 경우 예금자의 경우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까지는 각각 보호한도가 적용되지만, 1년 이후에는 하나의 금융회사로 간주하여 1인당 통합 5천만원까지 보호
③ D은행에 예금 7천만원과 대출 3천만원을 보유한 예금자의 경우	예금 7천만원에서 대출 3천만원을 차감한 4천만 원 보호

## ● 예금 보호 여부의 확인

보호대상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은 금융거래시 교부되는 통장, 증권 및 증서에 인지되는 보호여부 문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금융거래시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실예금주와 예금자의 명의가 다르거나, 비정상적인 이익을 보장받고 거래한 예금 등 비정상적인 예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예금주가 가족 명의로 차명예금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 전환 후 실예금주를 기준으로 예금액을 합산하여 1인당 보호한도를 적용하게 됩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이후 보험금을 지급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이후 예금자의 긴급한 자금수요 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험금지급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가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일로부터 약 2주 이내)

그러나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이들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이 일정기간 보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대출에 보증을 선 경우에는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보증채무 범위내에서 보험금 지급이 보류됩니다.